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
----------	----

제출년월일 : 2022. 11.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4.26. 공포)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 18세로 규정(개정법 제5조제1항)하고 있어 조례에서 '19세' 규정 삭제(안 제3조 개정)
- 나.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개정법 제7조)함에 따라 조례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삭제)
- 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거소' 표현 삭제(안 제8조제1항, 제9조 개정)
- 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0조, 제12조)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작성(안 제8조제1항 개정)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열람(안 제10조제1항 개정)

마.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반 단위로 실시(개정법 제16조제1항 단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반 단위로 작성(안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2조의2)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안 제12조 개정)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 : 안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 임기), 제14조(심의회의 운영), 제15조(심의회 간사),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신설

- 심의회 위촉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관련 규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수당)이 적용되므로 삭제 : 안 제12조제9항 삭제

사. 주민투표법 개정규정 별 시행일에 따라 개정조례의 시행일을 다르게 규정(안 부칙 단서 신설)

-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아. 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시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또한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별지 제1호서식 수정)
- 동 이하 소규모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표지에 대한 작성요령 추가(별지 제5호서식 수정)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등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삭제(별지 제1,2,3,4,5,6,7호 서식 수정)

자.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

제5조(주민투표권) ①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2) 「주민투표법」 제7조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

나.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

3의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3) 「주민투표법」 제10조 및 제12조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4) 「주민투표법」 제12조의2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주민투표법」 제16조제1항 단서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9. 29. ~ 10. 19.(20일)

-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 조문 대비표 : 첨부

3)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인권침해 가능성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부패요인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의견 있음 (별첨)

- 아동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권리침해 가능성 없음)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해당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u>성별을 고려하여</u>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검토사유】 성별 균형참여 필요 : 성별 균형참여 사항을 반영한 개선 의견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시 성별 고려하여 추진	【검토결과】 개선의견 반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를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로 한다.

제4조를 <삭제> 한다.

제8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를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청구인서명부”를 “주민투표청구서”로 하고, 같은 조 내용 중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하여야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를 “제12조”에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 한다.

제12조제5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로 분리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제6항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를 “제14조(심의회 운영 등)”으로 분리하여 제1항에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심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를 신설한다.

제12조제7항을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8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9항을 <삭제> 한다.

“제15조(심의회 간사)”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심의회에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간사는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를 신설한다.

제12조제10항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를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으로 분리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를 제17조로 하고 “7일이내에”를 “7일 이내에”로 한다.

제14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5조를 제19조로 한다.

제16조를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내용 중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2·3·4·5·6·7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번호	별 지 서 식 명	근 거
1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 제2호서식
3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제3호서식
4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제4호서식
5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	
6	주민투표청구서	“ 제6호서식
7	이의신청서	“ 제7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신청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 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5호서식】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자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u>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u>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u>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지방자치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행정동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2.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	<삭 제>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 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
----- .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

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
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
여야한다.

② ~ ④ (생략)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
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
시 성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
항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
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
을 말한다) -----
----- 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
12조의2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성별
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
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
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명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명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삭 제>

<삭 제>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신 설>

<신 설>

⑦ ~ ⑧ (생 략)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
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⑩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

있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
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
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
장이 소집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을 둔다.

② 간사는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
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

<u>로 정한다.</u> <u>제13조 ~ 제15조</u> (생략)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u>법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u>에 따른 공고는 구보 및 성북구 홈페이지 게시 또는 게재로 써 한다.	<u>한다.</u> <u>제17조 ~ 제19조</u> (현행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제20조(공표방법 등) ----- ----- ----- ----- <u>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제4항 및 제5항</u>----- -----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4.26.공포) 되어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신 신 재